

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

- 「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·청구 불일치」 자율점검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22.12.27. 시행 2023.1.1.)」 및 「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5호, 시행 2022.12.30.)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금번 「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·청구 불일치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일회용 부항컵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 내역과 실제 시행한 행위의 동일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()년 ()월부터 ()년 ()월 진료분(기관별 상이)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진신고 관련 안내

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(36개월)이외 기간이나, 대상 항목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,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은 면제됩니다.

다만,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(언론보도, 수사,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)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1) 자율점검 방법

- [점검사항]

- ① 일회용 부항컵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 금액 등) 일치 여부 점검
-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사용한 수량의 동일 여부 점검 등

- [점검대상기간]

- ① 6개월: 기관별 반기별 청구금액 상위기간
- ② 36개월: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착오청구 확인 시 '20.7. ~ '23.6. (36개월) 범위 내 추가 점검

- [제출기한]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- [제출서류]

- 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 - 자율점검결과서
 -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, 진료비계산서(영수증, 세부내역서)
 -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
 - 일회용 부항컵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
 - ※ 거래원장 스캔본과 거래명세서 엑셀파일을 요양기관 업무포털 또는 이메일로 제출
- ②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
- 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[제출방법] 등기우편, 직접 방문,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을 활용하여 접수

*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 담당직원과 사전협의 필요

(단, 담당직원 요청 시 등기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)

** (주소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- 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이은진 팀장 (☎ 033-739-5906), 안은정 과장 (☎ 033-739-5913)

오미지 과장 (☎ 033-739-5933), 정혜수 대리 (☎ 033-739-5925)

권폴잎 대리 (☎ 033-739-5912), 최선영 대리 (☎ 033-739-5946)

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

※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연계